

2009. 7. 7 (화) 16:30

전라북도청 중회의실 2

# 전북재정포럼 제6차 포럼

- ◆ 제6차 포럼 개요
- ◆ 제6차 전북재정포럼  
(주제) 지방교부세 제도 변화에  
따른 전북의 대응방안

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후원 : 전라북도·한국지방재정학회



# = 목 차 =

## ① 제6차 포럼 개요 5

---

- 개최개요 / 5
- 시간계획 / 5
- 전북재정포럼위원 / 6

## ② 제6차 전북재정포럼 7

---

- 주제발표
  - 경제위기에 대응한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 지방교부세제도 변화에 따른 전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손 희 준 (청주대학교 교수)



# 제 6 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 □ 개최개요

- 일 시 : 2009. 7. 7(화) 16:30~19:20
- 장 소 : 도청 중회의실2 (3층)
- 참여인원 : 21명 정도(포럼위원)
- 주요내용 : 제6차 전북재정포럼, 만찬
- 주 관 : 전북발전연구원
- 후 원 : 전라북도, 한국지방재정학회

## □ 16:36~18:00 주제 발표 및 토론

- 사 회 : 강 인 재 (전북대, 전북재정포럼대표)
- 발 표 : 손 희 준 (청주대학교)

### “지방교부세 제도 변화에 따른 전북의 대응방안”

##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최식 >	16:10~16:30	· 등 록	
	16:30~16:31 ( 1′)	·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 : 전발연
	16:31~16:36 ( 5′)	· 인 사	행정부지사
<제6차포럼>	16:36~17:00 (24′)	· 주제 발표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
	17:00~18:00 (60′)	· 포럼위원 토론	포럼위원
<만 찬>	18:10~19:20 (80′)	· 만 찬	지정장소

# 전북재정포럼위원

(참석대상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전공 주요경력	연락처	이메일	비고
합계			21명				
재정분과 (12)	전북대	교수	강인재	행정학 (전)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			대표
	전북대	교수	김영정				
	성균관대	교수	김혁	회계학			
	연세대	교수	배득종	재정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서정섭	지방교부세			
	한국방송대	교수	신종렬	재무행정학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전북대	교수	안국찬	행정학			
	전북대	겸임교수	안완기	비교정치			
	군산대	교수	유금록	정책분석평가, 재무행정			
	부경대	교수	이재원	지방재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	재정분석			
	전주대	교수	최원철				
청주대	교수	손희준				발표	
세제분과 (9)	원광대	교수	김명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선기	지방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재정학			
	호원대	교수	송재복	행정학			
	전북대	교수	신무섭	재무경제학			
	전북대	교수	안진	공공경제학			
	전북대	교수	윤석완	재정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삼주	지방세			
	경기대	교수	이재은	경제학			
지원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기	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희선	연구보조			

# 제 6 차 전 북 재 정 포 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 지방교부세제도 변화에 따른 전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발 표 자

손 희 준 (청주대학교 교수)





# 경제위기에 대응한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 지방교부세제도 변화에 따른 전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손 희 준 (청주대학교 교수)

## 목 차

- I.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 10
- II.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운영 특징 / 13
- III. 전라북도의 지방교부세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 19
- IV. 향후 보통교부세제도 합리적 산정방식 개선방향 / 29

### <별첨 / 30

- 1.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 제1항 관련)
- 2.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공식(제5조 제2항 제6호 관련)
- 3. 수요 항목별 사용통계 현황
- 4.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표(제5조의3 제2항 관련)
- 5. 부동산교부세제도 관련 법령
- 6. 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 산정현황
- 7. 08년도분 시·도별 거래세 감소분 교부액 개정방식 적용 후 비교
- 8. 일본의 보통교부세제도 개선(2007년도)

2009. 7. 7

전라북도

# 경제위기에 대응한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 지방교부세제도 변화에 따른 전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손 희 준 (청주대학교 교수)

## I.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 1. 제도 의의 및 연혁

#### □ 제도의 의의

-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 재원을 중앙정부가 일반재원(general grant)으로 보전하여 주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여기에 도로사업보전분, 분권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원래 지방교부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는 보통교부세제도 하나이며, 나머지는 나름대로의 배경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

#### □ 제도 연혁

- 지방교부세제도는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제도(국세 중 지세 등 특정세목의 일정율)로 출발하여 1962년부터 지방교부세제도(국세 중 영업세·주세 등 특정세목의 일정율)로 운영되고 있음. 1969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17.6%의 법정율로 운영되어 오다가 1973년~1982년 동안 8.3조치로 법정율이 유보되었다가 1983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2000년부터 15%, 2005년부터 19.13%, 2006년부터 19.24%로 법정율이 상향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제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운영되다가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내국세의 0.83%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도로사업보전분(8,500억원)이 보통교부세에 편입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2006년도부터는 법정율 외 종합부동산세 수입으로 운영되는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한편 1983년도에 신설된 증액교부금제도는 2005년도부터 폐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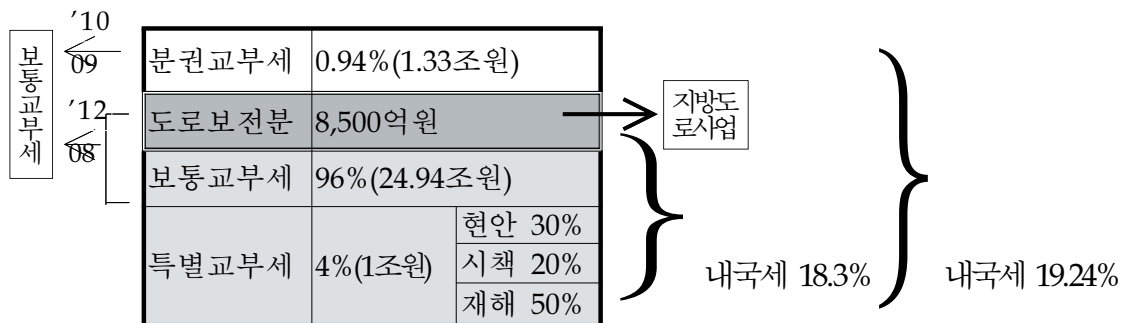
-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매년 변화되고 있음.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산정에 있어 기초수요(수입), 보정수요(수입), 자체노력(수요·수입) 산정의 항목과 방법들이 매년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부문 보다는 수요산정 부문과 자체노력산정 부문의 변화가 커,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와 운영

### □ 구조

- 2009년도 현재 지방교부세제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도로보전분(8,500억원)을 포함하여 내국세의 18.3%,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94%)를 포함하여 내국세의 19.24%로 운영됨. 하지만 분권교부세는 2010년, 도로보전분은 2012년에 보통교부세에 통합되기로 되어 있음.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운영되는 부동산교부세제도가 200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음.

<그림 1> 현행 지방교부세제도 구조와 내용



구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재정불균형 시정	-특별재정수요 대응	-지방이양 대상 사업 재원보전	-재원감소분 보전과 재정 균형
운영특성 (하위계정)	전액 공식 배분	-사업 배분 -현안, 시책, 재해	-공식, 사업 배분 -경상, 일반, 특수	-재원손실보전(해당단체)과 균형재원(공식배분)
재원구성	-내국세18.3%(도로보전분 포함) -도로보전분 8,500억원(한시운영) -재원의 96%	-재원의 4%	-내국세의 0.94%	-종합부동산세 전액
재원성격	-일반재원	-특정재원	-부분적 특정재원	-일반재원

□ 운영 현황

○ 2009년 현재 보통교부세 25조원,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는 각각 1조원 규모임

<표 1> 지방교부세의 요소별 자원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증액교부금	
1992	3,927,749	3,533,726	353,373		40,650	
1993	4,413,085	4,011,896	401,189		-	
1994	4,724,569	4,295,062	429,507		-	
1995	5,484,226	4,985,661	498,565		-	
1996	6,377,734	5,797,940	579,794		-	
1997	6,798,732	6,142,666	614,266		41,800	
1998	7,039,226	6,353,842	635,384		50,000	
1999	6,710,770	5,782,518	578,252		350,000	
2000	8,266,546	7,468,678	746,868		51,000	
2001	12,288,992	11,119,539	1,111,953		57,500	
2002	12,259,425	10,884,910	1,088,490		286,025	
2003	14,910,674	12,238,522	1,223,852		1,448,300	
2004	14,469,054	13,012,867	1,301,287		154,900	
2005	19,484,517	17,927,570	711,566	845,381	제도 폐지	581,357
2006	20,441,392	18,691,488	743,396	1,006,508	-	1,717,900
2007	22,624,220	20,692,123	826,756	1,105,341	-	2,881,400
2008	25,779,700	23,573,400	946,800	1,259,500	-	2,869,550
2009	27,279,107	24,942,490	1,003,854	1,332,762	-	1,448,200

○ 2008년도와 대비하여 2009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의 규모가 1/2이상 감소하였으며,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당초예산과는 달리 경기침체로 감소할 전망이며, 향후 1~2년간 지속될 수 있음(첨부 참조)

<표 2> 2009년도 지방교부세의 자원규모(당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배분비율	2008	2009	증△감	%
계		25,779,696	27,279,107	1,499,411	5.8%
보통교부세	96%+별도 정액	23,573,381	24,942,490	1,369,109	5.8%
재정부족보전분	96%	22,723,381	24,092,490	1,369,109	6.0%
도로보전분	850,000 정액	850,000	850,000	-	-
특별교부세	4%	총액 : 946,808 현안 : 473,404 재해 : 473,404	총액 : 1,003,854 현안 : 301,156 시책 : 200,771 재해 : 501,927	57,046	6.0%
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	1,259,507	1,332,763	73,256	5.8%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총액 3,177,011 1488200 △1,688,811 △53%

※ '09 내국세 : 141,783,300백만원(내국세액의 19.24%), 재원은 당초예산 기준임

◁첨부> 경기침체와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요인		
지방재정영향 요인	규모(추정)	비고
- 지방세수 감소	6.8조원	수도권 자치단체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	비수도권 자치단체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국고보조사업 증액 (지방비부담)	4.5조원 1.9조원	지방비 부담증가로 자치단체 자체사업 축소 가능성
- 지방채 추가인수	3.0조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완조치, 상환부담 우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2009.4,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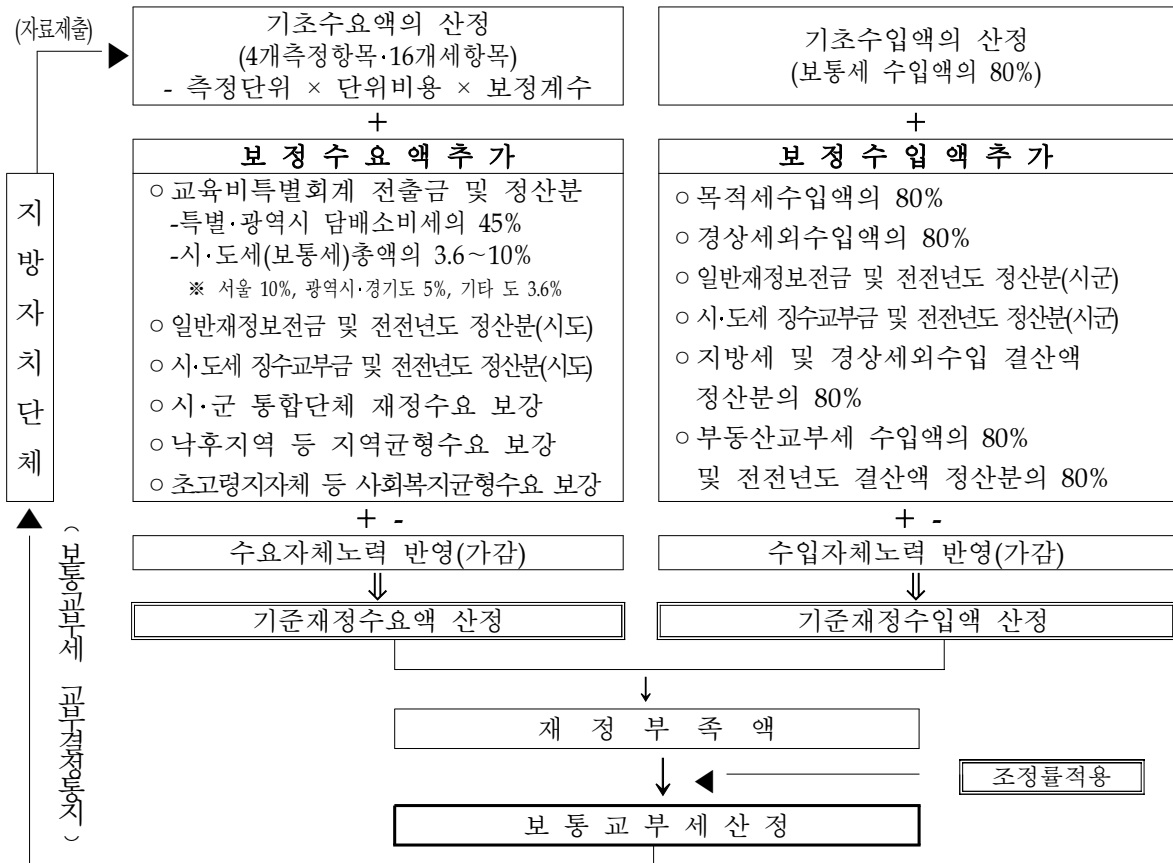
## II.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운영 특징

### 1. 보통교부세의 운영구조와 변화

#### □ 운영구조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기초(수요·수입)에 보정(수요·수입)을 더하고 자치 노력(수여·수입)을 가감하여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재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조정율(보통교부세 총재원 대비 재원부족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그림 2> 보통교부세 산정 흐름도



□ **신정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과제와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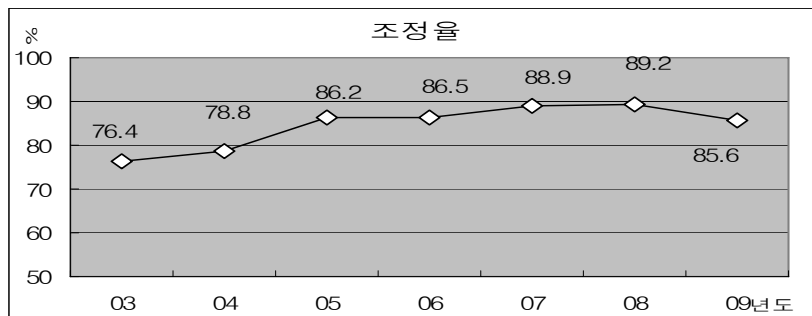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를 변경운영 하려는 개선과제는 대부분 수용됨. 즉,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에 무조건적 배분하기 보다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표 3> 신정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향과 결과

구분	개선 과제 및 내용	결과			
보 통 교 부 세	○ 지역경제 수요비중 상향조정 - '08년 24.9%(13.7조)→'09년 30%(17.1조)	*일반행정비 비중 축소 및 경제개발비 비중 확대			
	구분		일반행정	사회문화복지	경제개발
	08		19.3조(35.1%)	22.1조(40.0%)	13.7조(24.9%)
	09		17.0조(30.0%)	22.7조(40.0%)	17.1조(30.0%)
특 별 교 부 세	○ 성과·시책수요 신설 - 지역현안, 재해대책(현재) → 지역현안, 재해대책, 성과·시책수요	*지역현안(분)을 지역현안(30%), 시책수요(20%)로 변경 *재해대책에 재해예방 포함			
부 동 산 교 부 세	○ 재원 배분기준 개선 - 재정여건 50%→ <b>30%(축소)</b> - <b>예산절감 20%(신설)</b> - 복지(25%), 교육(20%), 보유세규모(5%)(유지)	*부동산교부세 부분적 위헌 결정으로 재원감소 *개선 안됨			
지 역 발 진 교 부 세	○ 보통교부세 재원 10%로 신설검토	*도로보전분 3년 기한 연장 (2009~2011)으로 대체			

□ **그 외 변경 및 개선사항**

- 조정율의 감소
  - 재원부족분의 85.6%(조정율 2009년도, 2008년도는 89.2%)를 보전해 주어 15% 정도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부족액의 상당부분이 보전되지 못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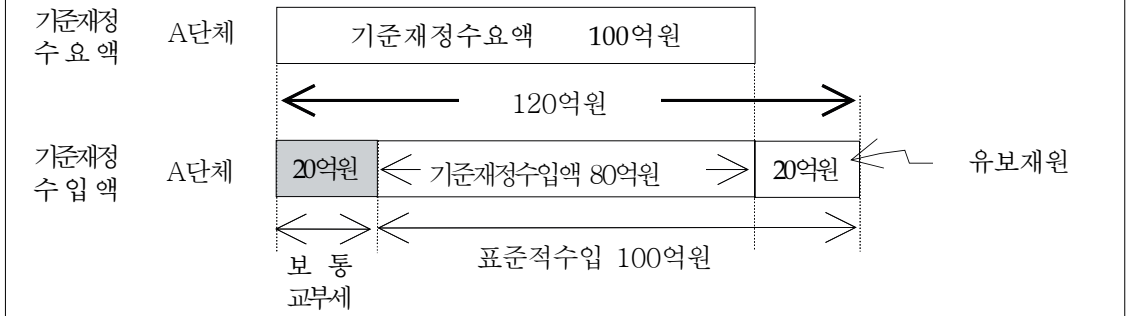


\*조정을 : 보통교부세총액(제주특별자치도 3% 제외)/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boxed{\text{기준재정수요액}} - \boxed{\text{기준재정수입액}} = \boxed{\text{재정부족액}} \approx \boxed{\text{보통교부세}}$$

(4개 측정항목·16개 세항목별 기초수요+보정수요±자체노력)      (보통세의 80%의 기초수입+보정수입±자체노력)      (조정률 적용)

\* 보통교부세 산정(재원부족액 보전분)



(2009년도의 경우 85%만 보전됨)

○ 산정 단순화(재정수요 산정) : 산정의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음

- 측정항목 : 4개 항목 17개 세항목 → 4개 항목 16개 세항목으로 축소

· 도로유지+교통관리 ⇒ 도로교통비

- 측정단위 : 13개 → 12개

· 도로면적(도로유지비)+자동차대수(교통관리비) ⇒ 자동차대수(도로교통비)

항목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비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영유아·청소년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일반사회복지비	농림수산비	지역경제비	도로개량비	도로교통비	지역개발비
측정단위	공무원수	인구수	인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노령인구수	영유아·청소년수	등록장애인수	인구수	농수산업종사자수	사업체종사자수	미개량도로의면적	자동차대수	행정구역면적

○ 수요인센티브 항목변경(세입·세출자체노력) : 정부정책의 지방 실현화 유도 확대

< 기준재정수요액(8종) >

- 건전예산운영(신설)
-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신설)
- 지방조직운영(신설)
- 지역경제활성화(신설)
- 생활폐기물절감(신설)
- 읍면동 통합 운영
- 지방청사(면적)관리 운영
-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 운영

< 기준재정수입액(6종)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 탄력세율 적용
- 경상세외수입 확충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지방세세원(새로운 형태의 부과세원) 발굴

- 자치단체 자체노력(수요, 수입)의 반영은 1997년도에 도입되어 반영항목이 확대되어 왔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녹색성장 관련 항목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견됨
- 2009년 현재 수요인센티브 8개 중, 수입인센티브 6개 중의 총 14개가 반영되고 있음

<표 4> 자체노력 반영 항목의 변화

구분	1997	1998	2000	2002	2005	2007	2008	2009
계	4종	5종	11종	13종	13종	10종	11종	14종
<수요>	3	4	5	5	5	3	4	8
공무원정원운영	0	0	0	0	0	x	x	x
비정규직공무원운영	0	0	0	0	0	x	x	x
경상경비절감운영	0	0	0	0	0	0	0	x
읍명동통합운영		0	0	0	0	0	0	0
지방청사(면적)관리운영			0	0	0	0	0	0
사회문화복지분야예산운영							0	0
건전예산운영								0
지방조직운영								0
지역경제활성화								0
생활폐기물절감								0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								0
<수입>	1	1	6	8	9	7	7	6
지방세징수율	0	0	0	0	0	0	0	0
상수도요금현실화			0	0	0	0	0	x
주민세개인균등화			0	0	0	0	0	0
종도세과표현실화			0	0	0	x	x	x
탄력세율적용			0	0	0	0	0	0
수수료현실화율			0	0	x	x	x	x
지방세체납액 축소				0	0	0	0	0
지방세원발굴				0	0	0	0	0
경상세외수입확충					0	0	0	0

○ 200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화의 종합

- 2009년도는 신정부의 지방교부세 개선과제의 첫 번째 말년 해로 기업유치,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 강화, 주민복진 증진지원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음

<표 5> 200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화내용 정리

구분	변경분야	변경내역
기업유치, 지역경제 인프라	경제개발비 분야 수요비중 확대	- '08년 24.9% → '09년 30%



지원강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 기업유치 등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항목으로 신설, 수요 반영
	산업단지조성등 지방세 감면액 반영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시·도세 및 시·군·구세 감면액의 10%~20%를 지역경제비 지역균형수요에 반영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수요 반영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강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면적에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을 적용하여 산정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복지 증진 지원 강화	기초수요 측정항목·측정단위 단순화	-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축소(17개 측정 세항목 → 16개 세항목, 13개 측정단위 → 12개 단위)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 적용통계 축소	- 공공청사보유면적 통계를 기초수요의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 산정공식에서 제외
	유동인구에 대한 수요 보정	- 유동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오폐수 등 환경수요와 교통혼잡에 따른 수요 보강을 위하여 환경보호비와 도로교통비 지역균형수요에 반영 - 유동인구에 관련항목 표준행정수요액의 10%를 반영
	낙후지역 수요 산정방법 변경	-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낙후지역의 수요보강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수요보정 적용기간 단축(5년 → 4년 평균)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수요 축소반영
	군인 등 보정인구에 대한 수요 보강	- 군인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행정수요 유발, 지역개발의 제한 등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수요 보강(측정항목 통합에 따른 수요 보강)
	노령인구비율에 대한 추가 보정	- 노인복지비 지역균형수요 산정액에 대하여 초고령단체는 80%, 고령단체는 40%, 고령화단체는 20%를 추가 보정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강화	수요 자체노력 인센티브 항목 보강	- 건전예산운영, 지방조직운영, 생활폐기물절감, 지방상수도유수율 제고 항목 신설
	건전예산운영 인센티브 대폭 강화	- 무분별한 축제, 의회비, 민간단체보조 등 낭비성 경비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종전 경상경비 절감운영을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조정 - 반영비율을 70% → 100% 확대 반영
	상수도 유수율 제고 인센티브 항목 신설	-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인센티브 항목 신설
	읍면동 통합운영 인센티브 강화	- 축소하는 자치단체 1개 읍면동당 운영비 예산액의 200%를 5년간 반영 - 매년 20%씩 체감 반영(300%) → 1,000%로 확대
	지방청사 관련 수요 산정 방법 개선	- 청사면적을 기초수요 산정 통계자료에서 제외, 별도의 인센티브 반영비율을 100% → 200%로 확대 반영
	건전한 지방조직운영 인센티브 부여	- 기준조직보다 조직을 축소 운영시 인건비의 300% 반영 - 자율조직(법정기준 제외) 축소 운영시 인건비 100% 반영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절감 인센티브 부여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인센티브 항목 신설 - 동중단체 평균 처리비용 대비 감소액의 50% 반영(최초 10%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50%까지 반영)
	감액제 적용기준 강화	- 위법한 예산지출에 대한 교부세 감액 적용기준 강화 - 지방채 미승인사업 예산 편성지출 : 위반지출금의 10/100 → 위반지출금액 이내 - 투·융자 미심사사업 예산 편성지출 : 위반지출금의 10/100 → 위반지출금액 이내

## 2. 부동산교부세의 운영특징

### □ 세수감소분 운영

- 세수감소분은 재산세 감소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감소분과 거래세 감소분으로 구분하여 보전하고 있음
  - 재산세 감소분 :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함
  -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감소분 : 2008년도 재산세등 부과액에서 해당연도 재산세등 부과액을 차감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함
  - 거래세 감소분 :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당해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감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 함

### □ 잔여재원 운영

-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수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총액 중에서 교부하고 그 잔액은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기준 및 비중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나누어 교부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 총액의 100분의 1.8로 산정하여 교부함.
  - 재정여건 : 100분의 50
  - 사회복지 : 100분의 25
  - 지역교육 : 100분의 20
  - 부동산 보유세 규모 : 100분의 5

### Ⅲ. 전라북도의 지방교부세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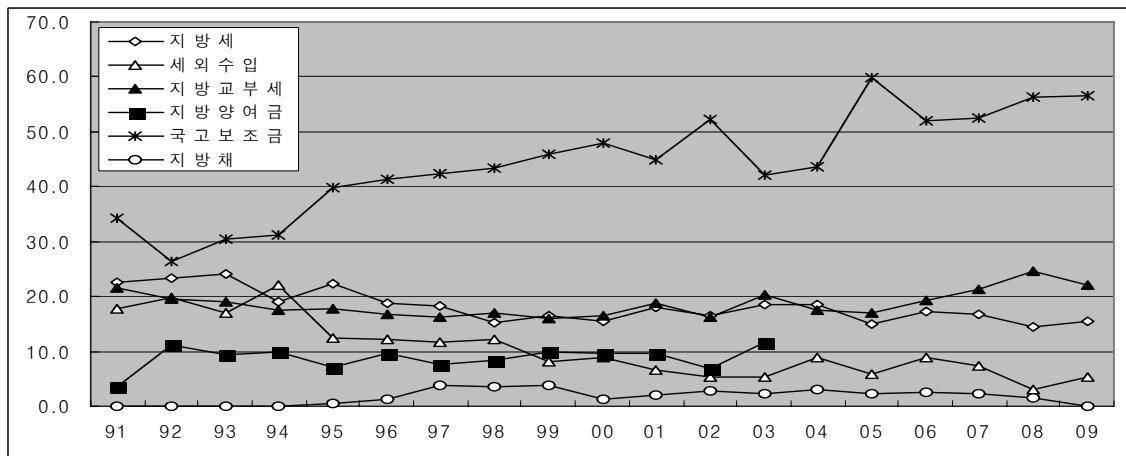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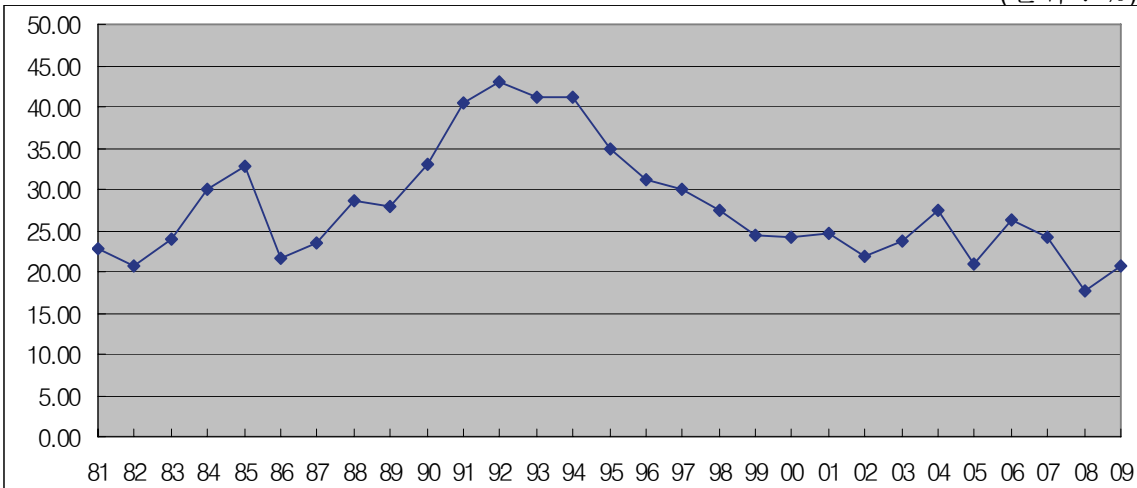
#### 1.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와 재원구성

##### □ 재정자립도와 재원구성

- 전라북도(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결산 기준으로 24.1%, 2008년 3차 추경 기준으로 17.6%, 2009년도 1차 추경기준으로 20.7%임. 1992년도의 44%대에서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음
- 이러한 영향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재원의 50%를 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3>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와 재원구성의 추이

(단위 : %)



주 : 2007년도까지는 결산기준, 2008년도는 3차 추경예산, 2009년도는 1차 추경예산 기준임

□ 일반회계 자원 규모

- 2009년도(1차 추정 기준) 일반회계 자원 규모는 3조 2,318억원(100%)이며 지방세 5,000억원(15.5%), 세외수입 1,680억원(5.2%), 지방교부세 7,156억원(22.1%), 국고보조금1조 8,252억원(56.5%), 지방채 230억원(0.7%)임
-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 이후 매년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보이며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30%정도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함

<표 6> 전라북도 일반회계 자원규모와 비중, 증가율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규모 (억원)	계	19,668	26,089	25,094	26,692	29,808	32,318
	지방세	3,668	3,916	4,333	4,445	4,320	5,000
	세외수입	1,731	1,529	2,266	1,970	917	1,680
	지방교부세	3,433	4,408	4,819	5,662	7,360	7,156
	보조금	8,562	15,604	13,032	14,033	16,790	18,252
	지방채	607	632	644	583	420	230
비중 (%)	지방세	18.6	15.0	17.3	16.7	14.5	15.5
	세외수입	8.8	5.9	9.0	7.4	3.1	5.2
	지방교부세	17.5	16.9	19.2	21.2	24.7	22.1
	보조금	43.5	59.8	51.9	52.6	56.3	56.5
	지방채	3.1	2.4	2.6	2.2	1.4	0.7
증가율 (%)	계		32.6	-3.8	6.4	11.7	8.4
	지방세		6.8	10.6	2.6	-2.8	15.7
	세외수입		-11.7	48.2	-13.1	-53.5	83.2
	지방교부세		28.4	9.3	17.5	30.0	-2.8
	보조금		82.2	-16.5	7.7	19.6	8.7
	지방채		4.1	1.9	-9.5	-28.0	-45.2

주 : 2007년도까지는 결산기준, 2008년도는 3차 추경예산, 2009년도는 1차 추경예산 기준임

□ 광역시·도분 보통교부세 산정액 중 전라북도의 비중 변화

- 광역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도는 비중이 작아지고 있음. 전라북도의 경우 2005년 11%대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9년은 9%대임. 이러한 경향은 다른 도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전라북도의 비중 감소는 다른 도에 비하여 감소폭이 작음

<표 7> 광역시·도분의 전라북도 비중(보통교부세 산정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08	2007	2006	2005
계	240,925	227,234	217,721	177,543	170,776
서울	0	0	0	0	0
부산	6,061	3,582	2,380	1,375	1,132
(비중)	9.28	6.31	5.02	3.73	3.33

대구	4,580	3,670	2,654	1,709	1,372
(비중)	7.02	6.46	5.60	4.64	4.03
인천	773	239	0	0	0
(비중)	1.18	0.42	0.00	0.00	0.00
광주	4,286	3,571	2,935	2,160	1,804
(비중)	6.57	6.29	6.19	5.86	5.30
대전	2,636	1,769	1,179	1,024	981
(비중)	4.04	3.12	2.49	2.78	2.88
울산	1,176	1,142	1,126	1,009	975
(비중)	1.80	2.01	2.38	2.74	2.87
경기	313	0	0	0	0
(비중)	0.48	0.00	0.00	0.00	0.00
강원	4,733	4,514	3,999	3,892	3,757
(비중)	7.25	7.95	8.44	10.56	11.05
충북	3,633	3,405	3,208	3,145	2,941
(비중)	5.57	6.00	6.77	8.53	8.65
충남	4,076	3,504	3,121	2,676	2,737
(비중)	6.24	6.17	6.58	7.26	8.05
전북	6,263	5,999	4,756	4,208	3,797
(비중)	9.59	10.57	10.03	11.42	11.17
전남	7,775	7,236	5,987	5,098	4,746
(비중)	11.91	12.75	12.63	13.83	13.96
경북	8,062	7,338	6,167	5,463	5,086
(비중)	12.35	12.92	13.01	14.82	14.96
경남	3,688	3,989	3,944	3,709	3,492
(비중)	5.65	7.03	8.32	10.06	10.27
제주	7,227	6,817	5,953	1,390	1,188
(비중)	11.07	12.01	12.56	(본청)3.77	(본청)3.49

주 : 감액·보전액 반영 이전의 보통교부세 산정액 기준임

- 2009년도의 경우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도는 증가하여 광역시에 많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표 8> 광역시·도분의 전라북도 비중(보통교부세 산정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08	2007	2006	2005	
기준재정 수요	계	22,990	17,695	13,667	12,945	12,489	
	광역	10,102	9,512	6,580	6,103	6,329	
	도	12,887	8,183	7,092	6,842	6,159	
	비중	광역	43.94	53.76	48.15	47.15	50.68
		도	56.05	46.24	51.89	52.85	49.32
기준재정 수입	수요계	16207	12094	8944	8653	8544	
	광역	7,823	7,945	5,418	5,256	5,602	
	도	8,384	4,148	3,569	3,397	2,941	
	비중	광역	48.27	65.69	60.58	60.74	65.57
		도	51.73	34.30	39.90	39.26	34.42

## 2. 전라북도의 보통교부세 관련 쟁점과 개선사항

### □ 보통교부세 규모 증가하다 2009년도 감소

○ 전라북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다가 2009년도(1차 추경기준)에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하나, 이는 내국세의 감소에 따른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05년 이후 광역시로의 보통교부세 증가가 이루어져 도(道)로의 보통교부세 증가가 둔화됨. 하지만 전라북도의 비중감소 폭이 앞서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도에 비하여 작음

### - 보통교부세 증가 둔화 및 감소에 대응한 재정운영 필요

### □ 자체노력 인센티브에서 일종의 페널티 효과 큼

○ 2008년도의 경우 수요인센티브 항목에서 경상경비절감운영, 지방청사관리운영의 페널티가 커서 9개 도 중 충북, 전남 다음의 3번째로 큰 페널티를 받음. 수입인센티브 항목에서도 지방세 징수율제고, 경상세외수입확충, 지방세채납액 축소에 페널티를 받았으나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함

○ 2009년도의 경우 수요인센티브 항목 중 지방청사관리운영에서 전남 다음으로 큰 페널티를 받음. 반면 2008년도와 다르게 2009년도에는 수입인센티브 항목에서 지방세징수율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방세채납액축소에서 큰 페널티를 받아 경기도 다음으로 큰 페널티를 받았음

<표 9> 광역시·도분의 전라북도 비중(보통교부세 산정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반영액	비고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건전예산운영	+65	'-'이면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하여 페널티 성격
	지방상수도유수제고율		
	읍면동 통합운영		
	지방청사관리운영	-3,445	
	사회문화복지예산운영	+641	
	지방조직운영	+966	
	지역경제활성화	+75	
	생활폐기물 절감운영		
계	-1,698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지방세징수율제고	+7,971	'+'이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여 페널티 성격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탄력세율적용		
	경상세외수입확충	+1,431	
	지방세채납액축소	+9,271	
	지방세원발굴		
	계	+18,680	

-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자치노력 반영에서 가장 큰 페널티를 받은 '지방청사운영'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0.35%, 기초수요액 대비 0.46%이며,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자체노력의 페널티는 이 보다 더 커서 체납액 축소의 페널티는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3.46%이며, 지방세징수율페널티는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3.49%임
- 참고로 2009년도 전라북도의 기준재정수입 산정에서 '보정수입'의 -효과가 커서 기초수입보다 기준재정수입의 규모가 작아 보정의 효과를 많이 보았음

<표 10> 자체노력 반영액의 규모와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요및수요	페널티 반영액	비중
청사페널티	기준재정수요	961,962	3,445(청사)	0.36
	기초수요	750,007	3,445(청사)	0.46
체납액축소페널티	기준재정수입	230,218	9,278(체납액)	4.03
	기초수입	271,850	9,278(체납액)	3.46
지방세징수율페널티	기준재정수입	230,218	7,971(징수율)	3.46
	기초수입	271,850	7,971(징수율)	2.93

주 : 기준재정수입이 기초수입보다 적은 것은 '보정수입'의 -효과가 크기 때문임

- 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페널티가 큰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

□ 제도 개선사항

-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등을 통한 보통교부세 산정공식 사전 제도화

현행제도	향후개선(반영)사항	미치는 영향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전년 12월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산정 교부하고 이후 연찬회를 통해 산정내용을 자치단체에 전파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수요분석 및 기초통계 제출 작업이 산정공식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수개월 전에 작성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정공식을 기초자료 제출 이전에 제도화하고 공개	수요분석 및 기초통계자료 제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객관적 자료 작성

- (2) 측정항목에 따른 측정단위 적용 변경

- 사회복지수요(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영유아·청소년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산정시 해당 인구수와 전체인구 대비 해당인구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비

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비율은 초고령, 고령, 고령화 기준 등에 의해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에서 해당단체의 점유비율로 보정을 하고 있음. 사회복지 관련 표준행정수요는 해당 인구수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향후 보통교부세 간소화를 위해 기초수요와 보정수요를 통합할 경우에도 주(主)기준보다는 보조기준을 활용할 필요는 있음

· <인구수 대비 측정단위 점유비율로 산정시 전라북도예의 효과>

현행제도	향후개선(반영)사항	미치는 영향
4개 분야 16개 측정항목, 12개 측정단위 적용 ⇒ 사회복지비 분야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해당인구수 적용	사회균형수요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시 측정항목의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비율로 적용	인구수 대비 측정단위 점유비율이 높은 단체에 유리 ※ 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현황(별첨 6 참조)

(3)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3 제2항) 산정기준 개선

산정항목 및 산정기준	향후개선(반영)사항	미치는 영향
<건전예산운영 산정기준>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물건비+경상이전경비) 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비중의 평균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물건비+경상이전경비) 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의 비중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 건전예산항목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경우 예산비중 증가(예농도인 우리도의 경우 국비사업인 쌀소득직불금이 타도에 비해 많음)  (개선방안) ○건전예산관리항목에서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경상비에서는 포함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만을 반영할 경우 실질적 건전예산운영 판단 가능

○ 개선방안

- 건전예산관리항목에서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경상비에서는 포함하는 방안도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경우 지방비 부담이 많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현재 산정공식	개선방안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비중의 평균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 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의 비중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보조금포함)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자체예산)비중의 평균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보조금포함)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보조금포함)의 비중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자체예산)총액

※개선방안에 의한 산정결과

『'09 보통교부세 반영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건전예산관리항목합계	1,273,683	387,101	104,757	121,428	121,672	130,397	141,127	135,253	131,948
경상비합계	13,683,745	4,956,273	884,927	875,636	1,259,550	1,293,966	1,351,012	1,398,538	1,663,843
비 중	0.102	0.078	0.118	0.139	0.097	0.101	0.104	0.097	0.079
인센티브액		4,645	-838	-2,246	304	65	-141	338	1,517

『'09 개선방안에 의한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건전예산관리항목합계(자체재원)	1,075,995	370,824	95,122	98,687	99,304	95,295	98,480	116,059	102,224
경상비(보조금포함)	13,683,745	4,956,273	884,927	875,636	1,259,550	1,293,966	1,351,012	1,398,538	1,663,843
비 중	0.083	0.075	0.107	0.113	0.079	0.074	0.073	0.083	0.061
인센티브액		1,483	-1,141	-1,480	199	429	492	0	1,124

(4)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작성대상 및 작성기준 개선

① 지방청사관리운영(인센티브 수요) 개선방안

산정항목 및 산정기준	향후개선(반영)사항	미치는 영향
<지방청사관리운영 산정기준> (청사㎡당 단위비용 × (적정면적 - 보유면적)) × 200%	(문제점) ○보유면적 산정시 제외면적기준 불합리 (개선방안) ○자치단체별 보유면적 산정시 제외면적 기준 변경 또는 표준면적사용	○공유면적 등을 제외면적으로 할 경우 보유면적이 축소되므로 페널티규모 축소

○ 개선방안

- 공영면적 등 보유면적에서 제외항목 추가

- 문화행사 장소로써 도민에게 대관되어 사용되는 대강당·갤러리 제외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를 제정(‘07.3.2)하여 도민에게 유·무상 대관하고 있음 ⇒ 대강당 대관실적(‘07~‘08) : 246건/167,310명 이용, 갤러리 이용실적 : 연 20회 이상(1회 당 2~3주 전시)
- 을지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전시상황전개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충무 시설 제외

※ 개선방안에 의한 산정결과

(단위 : m<sup>2</sup>,백만원)

구 분	총연면적	제외면적	보유면적	적정면적	단위비용	반영액 (페널티)
당 초	92,960	20,600 (입대 1,880 창고 821 주차장 9,718 중대본부 79 기타 7,351 체육시설 751)	72,360	47,797	70천원	-3,445
개 선 (제외면적추가)	92,960	30,646 (대강당 7,365 충무시설 2,389 갤러리292 추가)	62,600	47,797	70천원	-2,072

- 개선방안에 의한 반영액 산정시 적정면적 및 단위비용은 '09 산정기준 적용
- 대강당, 충무시설, 갤러리 등을 보유면적에서 제외하지 않고 표준면적(행안부에서 현재 운영중이며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시 표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서 제외할 경우에도 같은 효과 발생

② 환경보호비(기초수요) 적용통계 개선방안

산정항목 및 산정기준	향후개선(반영)사항	미치는 영향
<환경보호비 적용 통계> 가구수, 행정구역면적, 수질 관리시설(분뇨,하수,마을하수, 축산폐기물)처리용량, 자연공 원	(문제점) ○협오시설설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관리비용이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도심환경공해 및 해양환경오염 증가 (개선방안) 적용통계 항목에 폐기물매립장 및 폐수 종말처리용량 반영	○'08 현재 가동중인 전국폐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60개소), 농공단지(76개소)로써 환경개선 및 지자체 부담경감

(5)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5조2항 6호(지역균형수요) 산정기준 개선(변경)

현행 기준				향후 개선(반영)사항	미치는 영향
<산정기준> -2007:적자도선·버스수요산정액*50% -2008:적자도선·버스수요산정액*60% -2009:적자도선·버스수요산정액*60% ○예산편성수요분석액과 지역균형 수요액 비교(임실군의 경우) (단위:백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버 스재정지원사업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 조 및 동법시행령 13조, 시행규칙 45~48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경비부담의 성격이 강한바, 수요 산 정액을 수요 분석액의 100%로 현실화	도서벽지 기초생활 지 원을 위한 정책에 부합 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을 위한 교부세제도 취지에 부합 ※오지지역일수록 수요액이 많음
구분	수요분석액 (균비기준)	수요 산정액	비율		
2007	608	333	54.8%		
2008	1,096	598	54.6%		
2009	793	391	49.3%		

3. 부동산교부세 거래세 감소분 교부기준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전라북도 중심으로)

- '06. 9월 주택 거래세 세율인하(4%→2%) 등 세제개편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원기준이 최근 경제동향과 세법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간 불균형 배분이 심화되고 있어 개정 건의하고자 함
- '06년 이후 거래세 감소분 보전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편중하여 배분되고 있음
  - 년도별 거래세 감소분 교부액 :
    - ('06)4,920억 → ('07)9,143억 → ('08)10,465억 → ('09)39,271억
  - 대도시(서울, 경기, 대구, 부산) 배분 비율 :
    - ('06) 65% → ('07) 64.2% → ('08) 72.4% → ('09) 71.3%
- 2005년을 보전액 산정 기준년도로 규정하고 있어
  - 당시 거래가 활발했던 대도시 지역(서울, 경기, 대구, 부산)은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계속하여 거래세 감소분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 상대적으로 당시 거래량이 적었던 전북, 전남, 충북, 울산 등은 감소분 발생이 거의 없어 세수감소분 보전액은 기대하기 어려움
- 주택 거래세(취·등록세) 세율인하 분에 대한 보전이므로 주택거래세 감소분에 한하여 보전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토지나 일반건축물까지 포함하여 감소분을 산출하는 것은

당초 거래세 감소분 보전 목적에 불부합 함. 이로써 지역간 배분 불균형이 연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개선방안

- 부동산교부세 보전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
  - 거래세감소분 지원기준의 합리적 근거가 되는 주택유상거래의 취득·등록세 감면액 일정비율(10%)만 지원기준에 반영 ⇨ 전국 광역시·도 공평배분
  - 종합부동산세 총재원 중 일정비율만 세수감소분을 지원하므로 균형재원이 증가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제4항 개정(의원입법으로 2009년부터 시행)
  - 현행 교부기준 : 기준년도('05년) 대비 당해년도 거래세 차감액을
    - ⇨ 변경 1 ) 직전년도 주택거래세의 감면액 10% 이내
    - ⇨ 변경 2 ) 세수감소분과 균형재원을 50:50 균등 보전

현 행	개정(건의)
<p>③ 제1항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거래세 감소분”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당해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감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한다</p> <p>④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자치단체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세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한다.</p> <p>2.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총액 중에서 교부하고 그 잔액은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기준 및 비중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 총액의 100분의 1.8로 산정하여 교부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거래세 감소분”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직전년도의 주택유상거래 취득·등록세 감면세액 총액의 10% 이내로 하고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한다</p> <p>④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자치단체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50내에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한다.</p> <p>2.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50은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기준 및 비중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나누어 교부한다.</p>

## Ⅳ. 보통교부세제도 합리적 산정방식 개선방향

### 1. 배경

-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의 간소화 요구
- 둘째,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 출현으로 합리적 산정방식 필요
- 셋째, 국가시책 추진에 대한 보통교부세 역할 필요
  - 지역경제활성화, 녹색성장 유도 등 주요 시책 추진에 재원의 직접지원 기능 부재 및 인센티브 기능 미흡
- 넷째, 일반재원으로 경쟁 및 성과창출 유인기능 필요
  - 현행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기능 중심의 일반재원으로 지원함에 따라 경쟁유도를 통한 성과 유인 곤란, 세출절감·세입증대 노력 미흡 및 중앙의존 의식 인식됨

### 2. 개선방향

- 인구, 면적 등 기본통계를 적용한 산정방식 단순화(기초수요 10% 정도)
  - 인구규모의 단위비용차, 토지종류의 관리비용 차 반영(일본 신형교부세 도입)
  - 기초수요/보정수요 축소 또는 통폐합
    - \* 보정수요 지속적 증가(일몰제 적용)
    - \* 보정수요별 반영 요건, 기준, 규모 : 보정수요 보편적 기준
    - \* 국가시책 연계 지역인프라 수요 및 인센티브 확대와 연계
-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 출현 및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산정방식
  - 현재는 자치단체 동종별 표준행정수요, 단위비용, 인센티브 적용
  - 특별형태의 자치단체 출현, 행정체제 개편시 동종개념 변화
    - \* 일본은 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등의 수요보정 등 시행
- 국가시책 연계 및 경쟁, 성과창출 유도
  - 현재 인센티브제 운영, 일부국가시책과 연계한 수요 보정
  - 녹색성장 등 국가시책과 연계한 인프라구축수요 및 신규 인센티브 항목 개발
    - \* 전 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
    - ※ 이상에 대한 타당성 및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

**별첨 1**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 제1항 관련)**

측정항목		보정계수 산정공식
1. 일반행정비	(1) 인건비	(해당 자치단체 인건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수) ÷ 인건비 단위비용
	(2) 일반관리비	(해당 자치단체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일반관리비 단위비용
	(3) 안전관리비	(해당 자치단체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안전관리비 단위비용
2. 문화환경비	(1) 문화관광비	(해당 자치단체 문화관광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문화관광비 단위비용
	(2) 환경보호비	(해당 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가구수) ÷ 환경보호비 단위비용
	(3) 보건비	(해당 자치단체 보건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보건비 단위비용
3. 사회복지비	(1) 기초생활보장비	(해당 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 기초생활보장비 단위비용
	(2) 노인복지비	(해당 자치단체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노령인구수) ÷ 노인복지비 단위비용
	(3) 영유아·청소년복지비	(해당 자치단체 영유아·청소년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영유아·청소년수) ÷ 영유아·청소년복지비 단위비용
	(4) 장애인복지비	(해당 자치단체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등록장애인수) ÷ 장애인복지비 단위비용
	(5) 일반사회복지비	(해당 자치단체 일반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일반사회복지비 단위비용
4. 경제개발비	(1) 농림수산비	(해당 자치단체 농림수산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농수산업종사자수) ÷ 농림수산비 단위비용
	(2) 지역경제비	(해당 자치단체 지역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사업체종사자수) ÷ 지역경제비 단위비용
	(3) 도로개량비	(해당 자치단체 도로개량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미개량도로면적) ÷ 도로개량비 단위비용
	(4) 도로교통비	(해당 자치단체 도로교통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자동차대수) ÷ 도로교통비 단위비용
	(5) 지역개발비	(해당 자치단체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 ÷ 지역개발비 단위비용

**별첨 2**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공식(제5조 제2항 제6호 관련)**

□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

측정항목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
1. 일반 행정비	(1) 일반 관리비	① 낙후지역 수요(시·군·구) $\{(도서·오지지역\ 인구수 \times 동종\ 자치단체\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 행정수요액) \times 80\% + \{(도서·오지지역\ 면적 \times 동종\ 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 천m^2당\ 일반관리비\ 표준\ 행정수요액) \times 20\%\}$
2. 문화 환경비	(1) 문화 관광비	① 문화재보호구역 수요(시·군·구) $\{문화재보호구역면적 \times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문화재보호구역\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times 20\%$
	(2) 환경 보호비	① 해안지역 수요(시·군·구) $Y_i = 147.53285 + 1.08283S_j$ $S_j$ : 해안선 길이 ② 댐지역 수요(시·군·구) $Y_i = 34.17791 + 0.01125D_m$ $D_m$ : 댐 면적 ③ 저수지 지역 수요(시·군·구) $Y_i = 31.50286 + 0.00221J_s$ $J_s$ : 1종 저수지 면적 ④ 마을상수도지역 수요(시·군·구) $Y_i = 129.01039 + 9.31976G_a$ $G_a$ : 마을상수도 개소 수 ⑤ 유동인구 수요(시·군·구) 유동인구 $\times$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1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함 * 수요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
2. 문화 환경비	(2) 환경 보호비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요(시·군·구) $\{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 \times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자연환경보전지역\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times 20\%$ ⑦ 상수원보호·수변구역 수요(시·군·구) ○ $\{상수원보호구역면적 \times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상수원보호구역\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times 20\%$ ○ $\{수변구역면적 \times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수변구역\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times 20\%$ ⑧ 백두대간수요(시·군·구) $\{백두대간보호지역면적 \times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백두대간보호지역\ 천m^2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times 20\%$ ⑨ 낙후지역 상수도 위탁관리 수요(시·군·구)

		<p>해당 낙후지역 전전년도 수도 판매량 × (해당 낙후지역의 위탁기관 평균 시설개선 위탁단가 - 전전년도 지방상수도 위탁 자치단체 전국 평균 시설개선 위탁 단가) × 70%</p> <p>*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 중 낙후순위가 70위 이내인 자치단체로 하며, 산정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p> <p>☞ 보정인구 수요(시·군·구)  보정인구1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p> <p>*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3) 보건비	<p>① 댐 연접지역 수요(시·군·구)  <math>Y_i = 30.12659 + 0.005Dmp</math>  <i>Dmp</i> : 댐 연접지역(읍·면·동) 인구수</p>
3. 경제 개발비	(1) 농 림 수산비	<p>① 방조제, 배수갑문 수요(시·군·구)  <math>Y_i = 4.12603 + 0.00243Bj + 6.89997Bs</math>  <i>Bj</i> : 방조제 길이, <i>Bs</i> : 배수갑문수</p>
3. 경제 개발비	(1) 농 림 수산비	<p>② 방과제, 물양장(物揚場) 길이 수요 (시·군·구)  <math>\ln Y_i = 1.48666 + 0.3557 \ln By + 0.37628 \ln My</math>  <i>By</i> : 방과제 길이, <i>My</i> : 물양장 길이</p> <p>③ 경지 관련 수요(시·군·구)  <math>Y_i = (2,389.90238 + 1.1827Ja_2) \times 0.2</math>  <i>Ja<sub>2</sub></i> : 경지(논+밭) 면적</p> <p>*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에, 70%는 시·군·구에 반영</p> <p>④ 수산 관련 수요(시·군·구)  <math>Y_i = (1,011.06069 + 0.04046Fd + 0.00456Ma) \times 0.5</math>  <i>Fd</i> : 어장면적, <i>Ma</i> : 갯벌면적</p> <p>*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에, 70%는 시·군·구에 반영</p> <p>⑤ 축산 관련 수요(시·군·구)  <math>Y_i = 453.5787 + 0.02054An</math>  <i>An</i> : 소 두수 + 돼지 두수</p> <p>*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에, 70%는 시·군·구에 반영</p>
	(2) 지역 경제비	<p>① 산업단지조성 수요  ○ 시·도 : 산업단지 관련 시·도세 감면액 × 10%  ○ 시·군·구 : (산업단지 관련 시·도세 감면액 × 10%) + (산업단지 관련 시·군·구세 감면액 × 20%)</p> <p>②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수요(시·군)  폐광·개발촉진지구 면적 × 폐광·개발촉진지구 표준투자액(천㎡당)</p> <p>* 폐광·개발촉진지구 표준투자액(천㎡당)  <math>Y_i = 629.72307 + 0.06572Pk</math>  <i>Pk</i> : 폐광·개발촉진지구면적</p> <p>*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에, 90%는 시·군·구에 반영</p> <p>③ 보정인구 수요(시·군·구)</p>



		보정인구1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경제비 표준행정수 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 ④ 인구감소 수요(시·군·구) 보정인구3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경제비 표준행정수 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
3. 경 제 개발비	(3) 도 로 개량비	① 농어촌도로 수요(시·군) $Y_i = 1,069.48186 + 1.62725Na_1$ $Na_1 : \text{농어촌도로 미포장도 면적}$
	(4) 도 로 교통비	① 농어촌도로 수요(시·군) $Y_i = 164.79786 + 0.47725Na_2$ $Na_2 : \text{농어촌도로 포장도 면적}$ ② 유동인구 수요(시·군·구) 유동인구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교통비 표준행정수 요액 × 1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함 * 수요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 ③ 보정인구 수요(시·군·구) 보정인구2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교통비 표준행정 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 ④ 적자도선, 벽지버스 수요(시·군·구) $Y_i = 182.00755 + 91.13985Da + 1.81896Oa$ $Da : \text{적자도선 수, } Oa : \text{벽지버스노선 길이}$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
	(5) 지 역 개발비	① 개발제한구역 수요(시·군·구) {개발제한구역면적 ×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개발제한 구역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② 접경지역 수요(시·군·구) 접경지역면적(km <sup>2</sup> ) × 접경지역 표준투자액(km <sup>2</sup> 당) * 접경지역 표준투자액(km <sup>2</sup> 당) $Y_i = 345,097 + 3,438.61321Rk, Rk = \text{접경지역면적(km}^2\text{)}$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에, 90%는 시·군·구에 반영 ③ 보정인구 수요(시·군·구) 보정인구1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 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 ④ 인구격감 수요(시·군·구) 보정인구3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1인당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 요액 * 수요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
3. 경 제	(5) 지 역	⑤ 낙후지역 수요(시·군·구)

개발비	개발비	<p>도서·오지지역 면적 × 동종 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 천㎡당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p>⑥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수요(시·군·구) 동종 자치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면적 × 동종 자치단체 행정구역 천㎡당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동종 자치단체 특구지역 개소 수 × 해당 자치단체 특구지역 개소 수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p>⑦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 수요(시·군·구)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 2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p>⑧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지역 보전 수요(시·군·구)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국가 등 비과세지역 면적) × 2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	-----	---

- 주) ① 보정인구1 : 군인 수(미군 및 군속 포함) + 전·의경 수 + 의무소방대원 수 + 경비교도 대원 수 + 재소자 수
- ② 보정인구2 : 군인 수(미군 및 군속 포함)
- ③ 보정인구3 : 최근 4년 평균 인구수 - 기준시점의 과거 최근 6개월간 평균 인구수  
\* 산정된 인구수가 0보다 큰 자치단체에만 적용함  
\* 산정공식 중 '최근 4년 평균 인구수'는 2010년도에는 '최근 3년 평균 인구수'로 하고, 2011년도에는 '최근 2년 평균 인구수'로 함
- ④ 행정구역 전체가 도서로 이루어지고, 시청·군청 소재지가 도서 안에 위치하는 자치단체는 낙후(도서)지역 균형수요 산정액의 200%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할 수 있음(연륙 도서는 제외)

□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표

측정항목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공식
사 회 복지비	(1) 기초생활보장비	<p>○ 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 수요(시·군·구)</p> <p>- 동종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 20%(자치구는 10%) <math>\frac{\text{해당 자치단체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math></p> <p>*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2) 노인복지비	<p>○ 노령인구비율 수요(시·군·구)</p> <p>- 동종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 20%(자치구는 10%) × <math>\frac{\text{해당 자치단체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math></p> <p>* 초고령 자치단체는 수요 산정액의 80%, 고령 자치단체는 수요 산정액의 40%, 고령화 자치단체는 수요 산정액의 20% 추가 반영</p> <p>*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3) 영유아·청소년복지비	<p>① 영유아·청소년인구비율 수요(시·군·구)</p> <p>- 동종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 20%(자치구는 10%) × <math>\frac{\text{해당 자치단체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math></p> <p>*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p>② 가정위탁보호아동 수요(시·군·구)</p> <p>가정위탁보호아동수 × 동종 자치단체별 영유아·청소년인구 1인당 영유아·청소년 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p> <p>*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4) 장애인복지비	<p>○ 장애인비율 수요(시·군·구)</p> <p>- 동종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 20%(자치구는 10%) × <math>\frac{\text{해당 자치단체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math></p> <p>*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사 회 복 지 비	(5) 일반사회 복 지 비	<p>① 임대주택 관련 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 임대주택 관련 시·도세 감면액 × 10%</li> <li>- 시·군·구 : (임대주택 관련 시·도세 감면액 × 10%) + (임대주택 관련 시·군·구세 감면액 × 20%)</li> </ul> <p>②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수요(시·군·구)</p> <p>(등록외국인 수 + 결혼이민자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p> <p>*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p>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요(시·군·구)</p> <p>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p> <p>*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에, 60%는 시·군·구에 반영</p>
--------------	-------------------	---

주: ①  $A = (1 - \frac{\max X - X}{\max X - \min X}) \times \text{통계량}$

[maxX : 최고단체비율, minX: 최저단체비율, X : 해당 자치단체의 비율]

- ② '초고령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0% 이상인 자치단체로 하고, '고령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자치단체 총인구수의 14% 이상인 자치단체로 하며, '고령화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자치단체 총인구수의 7% 이상인 자치단체로 함

### 별첨 3

### 수요 항목별 사용통계 현황

측정항목 경비	측정단위	변수통계	
		기초수요(표준행정)	보정수요 (지역균형·사회복지균형)
① 인건비	공무원수	총액인건비	-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	인구수, 총액인건비공무원수, 지방의원수	도시·오지지역 인구수, 도시·오지 면적
③ 안전관리비	인구수	인구수, 재난관리대상 시설수, 소방관서수, 소화전연장	-
④ 문화관광비	인구수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문화·체육시설면적, 체육시설면적, 관광지면적(지정+특구)	문화재보호구역면적, 천㎡ 토지분재산세평균징정수액, 문화재보호구역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징정수액
⑤ 환경보호비	가구수	가구수, 행정구역면적, 자연공원면적, 수질관리시설(분뇨+하수+축산폐수)용량	해안선연장, 댐면적, 1종저수지면적, 보정인구1,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마을상수도개소수, 상수원보호구역면적, 수변구역면적, 천㎡ 토지분재산세평균징정수액, 규제지역천㎡당재산세평균징정수액, 유동인구수, 백두대간보호지역면적, 낙후지역전년전도수도판매량
⑥ 보건비	인구수	인구수, 보건시설면적, 무료예방접종인원수	댐연접지역(음면동) 인구수
⑦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
⑧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노령인구수, 노인복지시설면적, 경노당수(신고)	노령인구비율, 초고령자치단체, 고령단체, 고령화단체
⑨ 영유아·청소년복지비	영유아·청소년수	영유아·청소년인구수, 복지시설면적(아동+청소년)	영유아·아동청소년비율, 가정위탁보호아동수
⑩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시설면적	장애인비율
⑪ 일반사회복지비	인구수	인구수, 사회복지시설면적	등록외국인수, 결혼이민자수, 국적취득자수,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원수, 임대주택관련지방세감면액
⑫ 농림수산업비	농·수산업종사자수	농업종사자수, 수산업종사자수, 임야면적	방조제연장, 배수갑문수, 방파제연장, 물양장연장, 어장면적, 갯벌면적, 가축두수(소+돼지), 경지면적(전+답)
⑬ 지역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사업체종사자수	폐광·개축지구면적, 폐광·개축지구표준투자액, 보정인구1, 보정인구3, 산업단지 지방세감면액
⑭ 도로개량비	미개량도로의 면적	미개량도로(미포장도로+미개통도로+도시계획도로미집행) 면적, 면적기준평균지가, 행정구역면적	농어촌도로 미포장도 면적
⑮ 도로교통비	자동차대수	자동차대수, 행정구역면적, 도로(포장도로+미포장도로+도시계획도로집행)면적	농어촌도로 포장도 면적, 보정인구2, 적자도선수, 벽지버스노선길이, 유동인구수
⑯ 지역개발비	행정구역면적	행정구역면적, 인구수, 도시공원면적, 하천연장	개발제한구역면적, 개발제한구역천㎡당토지분재산세평균징정수액, 보정인구1, 보정인구3,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등비과세면적, 천㎡당토지분재산세평균징정수액, 도시·오지면적, 접경지역면적, 접경지역표준투자액, 지역특화발전특구면적, 지역특화발전특구개소수

주

- ① 보정인구1 : 군인(미군 및 군속포함), 전·의경,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 재소자
- ② 보정인구2 : 군인(미군 및 군속포함)
- ③ 보정인구3 : 최근 5년평균인구수 -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 평균인구수(산정된 인구수가0보다 큰 자치단체에 적용)

**별첨 4**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표(제5조의3 제2항 관련)**

구분	반영항목	산정공식
1.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1. 건전예산 운영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 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비중의 평균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 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의 비중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 = 물건비 + 경상이전경비
	2. 지방상수도 우수율 제고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징수액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우수율 - 전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우수율) × 1/2}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우수율 - 전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우수율) × 1/2}] × 70%
	3. 읍면동 통합운영	동종 자치단체 평균 1개 읍면동비 × (해당 자치단체 전전년도 읍면동 수 - 전년도 읍면동 수) × 1,000% ※ 최초 산정금액을 5년간 균등분할 반영. 다만, 2008년도 산정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반영. ※ 역인센티브는 없음
	4.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청사 m <sup>2</sup> 당 단위비용 × (적정면적 - 보유면적)} × 200%
	5.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대비 사회문화·복지분야 일반재원 예산 비중 - 동종 자치단체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대비 평균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 비중)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중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액} × 10%. ※ 역인센티브는 없음
	6. 지방조직 운영	①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법정 국·과의 수 - 전년도 10월 31일 조례상 국·과의 수) × 기준 정원 × 동종 자치단체 인건비 단위비용] × 300%] ② [(전전년도 10월 31일 기준 조례상 과 수 -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조례상 과의 수) × 기준정원 × 동종 자치단체 인건비 단위비용] × 100%] ※ 수요는 “①+②”를 반영. 단, ①을 우선 반영하며, ②와 중복 반영은 배제, ①, ②는 각각 역인센티브 없음
	7. 지역경제 활성화	① (해당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 - 동종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평균 증가율)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지역경제비 예산액 ② (해당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사업체 수 증가율 - 동종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사업체 수 평균 증가율)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지역경제비 예산액 ※ 수요는 “①+②”를 반영. 단, ①, ②는 각각 역인센티브 없음
	8. 생활폐기물 절감	{(해당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생활폐기물 절감률 - 동종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평균 생활폐기물 절감률)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환경보호비 예산액 중 폐기물부분 예산액} × 10% ※ 역인센티브는 없음

구분	반영항목	산정기준
2. 기준 재정 수입액 반영 사항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전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중 지방세징수율 상위 1/2단체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00% ※ 과년도분 부과징수실적 및 주행세 부과징수실적 제외
	2. 주민세개인균 등할 인상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중 개인균등할 적용세액이 상위 1/3인 자치단체의 평균 개인균등할 적용세액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개인균등할 적용세액) × 부과인원
	3. 탄력세율 적용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4. 경상세외 수입 확충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실적 × (동종 단체 중 전전전년도기준 과거 3년간 대비 전전전년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이 상위 1/2인 자치단체 평균징수율 - 해당 자치단체 전전전년도기준 과거 3년간 대비 전전전년도기준 과거 3년간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비율)} × 100%
	5. 지방세 체납액 축소	(전전년도 지방세 미징수액 누계액 - 전전전년도 지방세 미징수액 누계액) × 100% ※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 주행세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
	6. 지방세 세원발굴	① ① 신규 세원 관련 세액 × 적용률 ② ② ※ 적용률 : 최초 3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차감 반영 * 지방재원의 선투자 등 실질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수반된 경우에만 해당함 * 신규 세원: 새로운 형태의 부과세원을 말함 * 신규 세원 발굴로 실제 발생한 수입액을 기초로 산출함

## 별첨 5

## 부동산교부세제도 관련 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 세제(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세수) 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세수감소분"이라 한다)은 재산세 감소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감소분과 거래세 감소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5.21>

②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감소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2.13>

1.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연 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 제195조의2의 세 부담 상한규정에 따라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2.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 부담의 상한 인하에 따른 재산세감소분은 2005년도분 재산세 부과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재산세·종합토지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한 세액에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

감소분[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 감소분은 「지방세법」 제6조의2제2항 및 법률 제854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구(區)분 재산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은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2008년도 재산세등 부과액에서 해당 연도 재산세등 부과액을 차감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신설 2009.5.21>

④제1항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거래세감소분"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



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당해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감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09.5.21>

⑤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자치단체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2009.5.21>

1.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세감소분 및 재산세등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한다.

2.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총액 중에서 교부하고 그 잔액은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기준 및 비중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 총액의 100분의 1.8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가. 재정여건 :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 100분의 25

다. 지역교육 : 100분의 2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 100분의 5

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신설 2007.12.13, 2009.5.21>

⑦부동산교부세의 교부시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9.5.21>

⑧자치단체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 또는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09.5.21>

⑨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09.5.21>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기준) ①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2004년도분 재산세 부과액" 및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과 "2005년도분 재산세 부과액"은 각각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은 정기분(7월, 9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연도 결산액에 의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재산정한 후 다음 연도 부동산교부세 교부시에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은 특별시분과 자치구분 재산세액을 합하여 부과액을 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세 감소분을 산정하기 위한 2004년도분 재산세 부과액과 종합토지세 부과액 및 2005년도분과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은 특별자치도 시행 전의 4개 시·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07.12.13>

②영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당해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부과액과 11월 및 12월의 부과액의 추계액(1월부터 10월까지의 부과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하되, 다음 연도 결산액에 의하여 "당해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재산정한 후 다음 연도 부동산교부세 교부시에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지방세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결산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7.3>

③영 제10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잔액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6.12.27]

**제8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6.12.27]

**별첨 6**

**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 산정현황**

(단위 : 명/백만원)

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현황(측정단위(명)/수요액)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영유아청소년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서울	205,876/562,987	869,676/514,643	2,932,960/885,255	347,310/259,082
부산	139,693/196,338	356,263/213,891	1,021,810/246,457	148,145/ 67,174
대구	97,036/126,742	227,789/132,356	785,836/139,214	100,082/ 48,793
인천	70,988/ 94,383	211,158/128,449	864,233/191,603	108,823/ 45,703
광주	61,309/ 80,801	116,369/ 71,314	494,474/ 89,960	57,280/ 24,339
대전	46,766/ 61,797	116,858/ 73,385	494,431/ 92,630	59,978/ 29,505
울산	19,452/ 23,889	68,248/ 32,970	374,643/ 67,798	40,758/ 18,362
경기	210,875/163,613	897,593/ 89,390	3,649,847/211,127	407,247/ 79,801
강원	64,850/ 41,964	206,738/ 18,770	444,017/ 41,973	85,594/ 13,820
충북	57,265/ 36,353	190,264/ 18,869	470,659/ 33,397	79,826/ 10,517
충남	76,614/ 50,865	290,616/ 26,737	600,610/ 31,599	109,288/ 16,597
전북	118,917/ 84,478	269,908/ 27,200	567,078/ 50,495	116,141/ 18,007
전남	120,995/ 86,183	337,234/ 34,021	556,433/ 46,467	125,731/ 19,485
경북	127,450/ 91,510	398,610/ 40,013	767,377/ 80,195	143,009/ 23,568
경남	108,859/ 76,287	361,462/ 35,566	999,582/ 70,316	152,017/ 25,187
제주	수요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교부세 재원의 3%를 정액 교부			
측정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노령인구수	영유아청소년수	등록장애인수

**별첨 7**

**08년도분 시·도별 거래세 감소분 교부액 개정방식 적용 후 비교**

(단위 : 백만원)

시 도	현 행	개 정		증 감
	교 부 액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세액(A)	교 부 액 (B=A의 10%)	
전 국	1,046,543	5,293,287	529,328	△517,215
서 울	356,995	1,525,845	152,584	△204,411
부 산	143,185	306,464	30,646	△112,539
대 구	186,276	236,567	23,656	△162,620
인 천	0	381,493	38,149	38,149
광 주	68,007	106,119	10,611	△57,396
대 전	70,067	113,746	11,374	△58,693
울 산	0	144,095	14,409	14,409
경 기	70,610	1,385,842	138,584	67,974
강 원	26,597	105,741	10,574	△16,023
충 북	0	126,582	12,658	12,658
충 남	23,414	179,518	17,951	△5,463
전 북	0	130,517	13,051	13,051
전 남	0	97,820	9,782	9,782
경 북	14,925	154,057	15,405	480
경 남	48,173	276,853	27,685	△20,488
제 주	38,294	22,028	2,202	△36,092

\* 본 비교표의 교부액은 주택거래세 감면액의 10%를 교부기준으로 산정한 예시문임

# 별첨 8

# 일본의 보통교부세제도 개선(2007년도)

## 산정비목의 통합 및 수정

### ① 도부현분

2006년도

2007년도

비목	측정단위	
경찰비	경찰직원수	
도로교량비	도로 면적	
하천비	하천 연장	
항만비	계류시설 연장(항만)	
	계류시설 연장(어항)	
그 외 토목비	인 구	
소학교비	교직원수	
중학교비	교직원수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학급수	
특수교육제학교비	교직원수	
	학급수	
그 외 교육비	인구	
	공립대학등 학생수 사립학교등 생도수	
생활보호비	정촌부 인구	
사회복지비	인구	
위생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74세 이상 인구	
노동비	인구	
농업행정비	농가수	
임야행정비	공유이외 임야면적	
	공유임야 면적	
수산행정비	수산업자수	
상공행정비	인 구	
징세비	세대수	
은급(恩給)비	은급수급권자 수	
기획진흥비	인 구	
그 외 제비용	인 구	
투자경비	도로교량비	도로의 연장
	항만비	외곽시설의 연장(항만)
		외곽시설의 연장(어항)
	하천비	하천 연장
	고등학교비	생도수
	특수교육제학교비	학급수
	사회복지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이상인구
	농업행정비	경지 면적
임야행정비	임야 면적	
그 외 제비용	인구 면적	

### 1 개별산정경비(종래형)

비목	측정단위
경찰비	경찰직원수
도로교량비	도로의 면적
	도로의 연장
하천비	하천의 연장
항만비	계류시설 연장(항만)
	외곽시설 연장(항만)
	계류시설 연장(어항)
	외곽시설 연장(어항)
그 외 토목비	인 구
소학교비	교직원 수
중학교비	교직원 수
고등학교비	교직원 수
	생도수
특별지원학교비	교직원수
	학급수
그 외의 교육비	인구
	공립대학등학생수 사립학교등생도수
생활보호비	정촌부인구
사회복지비	인구
위생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74세 이상 인구
노동비	인 구
농업 행정비	농가수
임야행정비	공유이외의 임야의면적
	공유임야의 면적
수산행정비	수산업자수
상공행정비	인 구
징세비	세대수
은 급 비	은급수급권자수
지역진흥비	인 구

### 2 포괄산정경비(신형교부세)

인	구
면	적

메모....

메모....

메모....



메모....